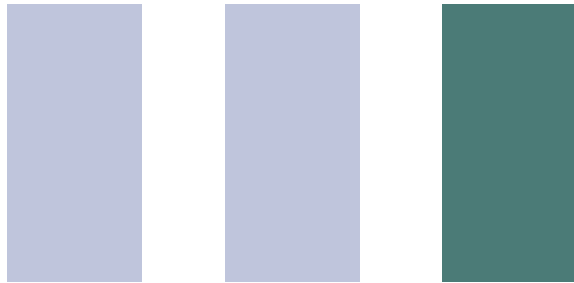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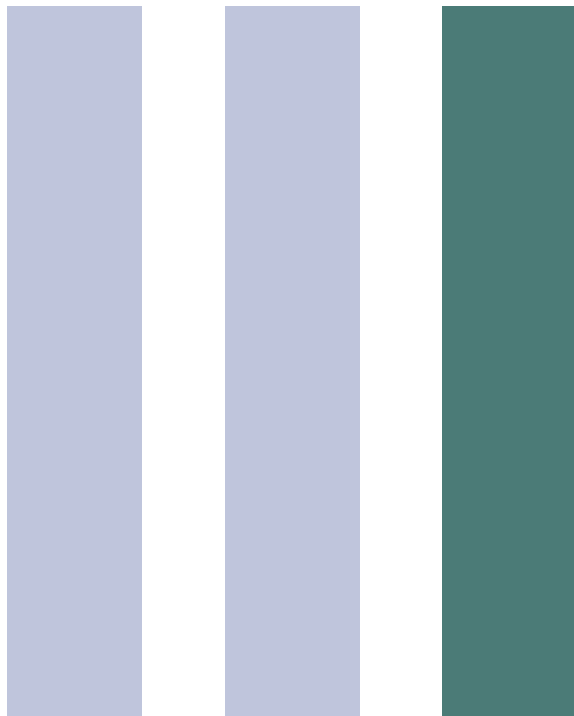


미국장로교연금국



# 은퇴 저금 플랜

Retirement Savings Plan





## 미국 장로교 은퇴 적금 플랜

만약 이 책자와 공식적인 혜택 플랜 문서들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혜택 문서가 우선합니다. 공식적인 혜택 플랜 문서가 필요하면 800-773-7752 (800-PRESPLAN), 연금국에 전화하십시오. 또, 여러가지 자료가 연금국 웹사이트인 [www.pensions.org](http://www.pensions.org)에도 올라 있습니다.

### 차례

<b>중요 사항</b>	1	구좌 잔고 결정	5
적립금	1	분기별 개인구좌 통지서	5
투자 종류	1	구좌 잔고 조회	6
인출	1	<b>투자 옵션</b>	6
소득세 연기	1	<b>해당되는 법</b>	6
세금 크레딧	1	<b>인출</b>	6
사회 보장세	1	은퇴	6
<b>등록</b>	2	65세 이후 근무	7
수혜자 지정	2	장애	7
<b>적립</b>	2	군복무	7
고용인 적립	3	퇴직	7
Saver's Tax Credit	3	가입자 사망	7
고용주 적립액	3	인출 신청	7
최대 적립 한도액	3	인출 종류	8
적립 한도의 예	3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인출	8
특수 상황	4	이전 (Rollovers)	8
장기 근무한 가입자	4	수수료	8
50세가 넘은 가입자	4	<b>근무 중일때 인출</b>	9
이전 (Rollovers)	4	<b>재심 신청 절차</b>	9
투자	4	<b>행정</b>	9
고용주/교회 주소 변경	5	<b>이혼시 혜택에 관한 권리</b>	10
투자 수익	5	<b>플랜 개정이나 종료</b>	10
투자 분배	5	<b>자세한 내용</b>	10
투자 종목 변경	5	<b>적립금</b>	10

# 은퇴 적금 플랜

## 중요 사항

미국 장로교 관련 고용 기관은 안수받은 목회자나 선교사, 그리고 일반 직원에게 403(B)(9) 플랜인 은퇴 적금 플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일반 혜택 플랜의 여러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 기관도 은퇴 적금 플랜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 기관은 Adoption Agreement 양식을 기입하여 공식적인 은퇴 적금 플랜의 문서에 있는 규정과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적립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은퇴 적금 플랜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연기 계약 (salary deferral agreement) 을 통한 고용인 자신에 의한 자발적인 적립,
- 고용 기관에 의한 적립 (재량에 따라),
- 403(b) 플랜, 401(k) 플랜, 401(a) 플랜이나 IRA 로부터 이전
- 연금국으로부터 미리 승인된 경우에 한해서 다른 403(b) 플랜으로부터 이전.

누가 적립하든 상관없이 적립된 액수 전액은 100 % 수령권이 항상 주어집니다.

## 투자 옵션

Fidelity Investments는 은퇴 적금 플랜을 위한 회계 서비스와 여러 종류의 투자 기금을 제공합니다. 각기 다른 위험도와 투자 수익 가능성을 가진 11가지 투자 옵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 미국 장로교의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 지침을 따르는 두 개의 전용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입자는 총적립액의 1% 배수 비율로 11가지 투자 기금 중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적립액이나 앞으로 적립할 액수에 대하여 언제든지 투자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인출

적립금은 은퇴할 때 (55세 이후), 59.5세가 되었을 때, 장애자가 되었을 때, 자격이 되는 교회 관련 기관에서 퇴직했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지정한 수혜자가 남아있는 적립액을 받습니다. 심각한 재정적인 곤란을 겪는 가입자는 자신이 플랜에 적립한 액수에 한해 인출할 수 있도록 연금국의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그간의 투자 수익이나 고용주가 적립한 액수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인출한 금액을 주거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연금국은 인출 전액을 매년 주거비(Housing Allowance)로 지정합니다. 이 때,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07의 규정에 따라 주거비는 연방세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정부 세금도 주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됩니다. Fidelity 로부터 인출을 요청할 때 안수받은 목회자는 인출액을 주거비로 사용할 것임을 알려야 하며 그 인출액이 세금 보고서에 주거비로 지정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소득세 연기

연방 정부는 403(b)(9) 플랜 가입자들에게 세금 연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은퇴 적금 플랜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을 연기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액수만큼 연방 소득세를 보고할 때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며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소득세를 보고할 때도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나중에 플랜에서 인출할 때까지 적립액과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세금 크레딧

연방법은 저소득 가입자를 위하여 403(b)(9) 플랜 가입자에게 세금 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플랜에 적립하도록 권유합니다. 연방세 크레딧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3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사회 보장세

안수받은 목회자는 은퇴 적금 플랜에 적립하는 액수에 대하여 SECA (Self-Employment Contributions Act, 자영업자 적립법) 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보장세를 위한 소득을 보고할 때 은퇴 적금 플랜에 적립한 액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사회 보장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 직원은 적립금에 대하여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연방 보험 적립법)세가 적용됩니다.

## 등록

등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가입자와 자격이 되는 고용기관은 양식, Salary Deferral/Employer Agreement (ORS-001) 을 작성하여 연금국으로 직접 보내고,
- 가입자는 Fidelity Enrollment Form 을 작성하여 Fidelity 로 보내야 하며,
- 아직 접수하지 않았으면 고용기관은 Adoption Agreement 를 기입하여 연금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 고용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장로교 교회,
- 미국장로교와 관련되거나, 미국 장로교 산하 이사회, 기관, 기타 고용 기관이나,
- 승인된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고용한 고용기관입니다.

해당 양식은 은퇴 적금 플랜등록 서류안에 들어 있으며, 이 서류는 담당 기관인 Fidelity, 800-343-0860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도 있고 연금국 웹사이트인 [www.pensions.org](http://www.pensions.org)에서 다운로드 받아도 됩니다.

연금국과 Fidelity 가 각각 해당 서류를 받아야 등록이 진행됩니다. 가입자가 은퇴 적금 플랜에 등록하면 Fidelity 는 가입자의 이름으로 구조를 만듭니다. 모든 적립금은 그 구조로 입금되며 가입자는 입금된 전액에 대하여 바로 100% 수령권을 가지게 됩니다. 수령권의 의미는 가입자만이 그 적립금을 소유하며 그 적립금의 투자와 인출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말합니다.

## 수혜자 지정

가입자는 Fidelity Investments 로 보내는 등록 양식에 원하는 사람이나 trust 를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차 수혜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가입자 사망시 지정한 수혜자가 사망하고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불됩니다:

-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에 적어도 1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배우자,
- 부양 자녀들에게 똑같이,
-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경우 Estate.

가입자가 수혜자를 바꾸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수혜자 지정 양식을 새로 기입하여 Fidelity로 보내면 됩니다.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Fidelity 가 그 양식을 받았을 때 유효합니다. 수혜자 지정 양식이 필요하면 Fidelity, 800-343-0860으로 전화하십시오.

## 적립

은퇴 적금 플랜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연기 계약에 의한 고용기관을 통한 가입자의 자발적인 적립;
- 고용 기관에 의한 적립 (재량에 따라),
- 403(b) 플랜, 401(k) 플랜, IRA, 그리고 특정 연금 플랜으로부터 이전.
- 연금국이 미리 승인한 조건으로 다른 403(b) 플랜으로부터 이전.

일단 은퇴 적금 플랜에 등록이 되면, Fidelity 는 적립액이 기재된 청구서를 가입자의 고용기관으로 보냅니다. 고용 기관은 Fidelity Investments 앞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Fidelity로 직접 보냅니다.

고용주가 적립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은퇴 적금 플랜에 보낸 적립금은 연금국에 보고하는 가입자의 실제급여 (effective salary)에 포함됩니다. 이 실제 급여는 혜택 플랜하의 가입자의 부담금, 의료 보험 혜택 공제액, 혜택 금액 등을 계산하는데 사용됩니다. 은퇴 적금 플랜 가입자는 이 적립액을 혜택 플랜을 위한 양식인 Service/Salary Change form (ENR-100) 의 Deferred Compensation section 에 기입하여 연금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기관과 가입자의 급여에서 적립된 적립금은 은퇴 구조로 들어간 액수가 연방세법 Sections 415 와 402(g) 에 명시된 적립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고용인 적립 (Employee Contributions)

등록할 때 가입자와 고용 기관이 Salary Deferral/Employer Agreement form (ORS-001)을 기입함으로써 가입자는 받을 급여의 일부분을 받지 않고 세금을 내기 전에 은퇴 적금 플랜에 적립하도록 고용 기관에게 허락합니다. 이렇게 하여 가입자는 은퇴를 위하여 따로 저축하며, 현재 세금을 내야하는 급여액을 줄이고 그 만큼 내야하는 소득세 납부를 연기합니다.

Salary Deferral/Employer Agreement form (ORS-001) 이 필요하면 연금국으로 800-773-7752 (800-PRESPLAN)으로 전화하거나, 연금국 웹사이트 [www.pensions.org](http://www.pensions.org)를 이용하십시오. 연금국은 바로 기재되지 않은 양식을 다시 돌려보내기 때문에 등록 절차가 늦어지지 않고 원하는 때에 가입하고 투자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한번 더 확인하십시오.

## Saver's Tax Credit

은퇴 적금 플랜에 적립한 액수는 Saver's Tax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금 크레딧은 은퇴 적금 플랜에 더 많이 적립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크레딧은 조정된 수입(Adjusted Gross Income, AGI)이 2010년에 독신일 때 \$27,500 이상이거나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를 할 경우 총수입이 \$55,000 이상일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 크레딧 액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2,000 혹은 적립액 중 더 작은 액수의 일정비율입니다.

세금 보고 형태		
AGI (조정된 총수입)	각자 보고	부부 함께 보고
0 부터 \$16,500	50%	50%
\$16,501 - \$18,000	20%	50%
\$18,001 - \$27,750	10%	50%
\$27,751 - \$33,000	0	50%
\$33,001 - \$36,000	0	20%
\$36,001 - \$55,500	0	120%
\$55,501 이상	0	0

## 예

Mary Thomas 는 결혼하여 가족 수입 AGI 가 \$31,000 입니다. 은퇴 적금 플랜에 \$2,000을 넣었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적립금을 뺀 AGI 가 \$29,000 이 되며, 따라서 은퇴 적금 불입금에 대해 50%의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2,000의 50%는 \$1,000 이 됩니다. 따라서, Mrs. Thomas 는 세금 보

고를 할 때 \$1,000 의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이 세금 크레딧은 은퇴 적금이 모이도록 도와줍니다. 위의 경우, 플랜 가입자가 \$2,000을 은퇴 적금 플랜에 적립하면 미국 정부가 조정된 총수입을 \$2,000 줄여줍니다.

## 고용주 적립 (Employer Contributions)

가입자를 위하여 고용주가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기입하는 Retirement Savings Plan Adoption Agreement 는 고용주 적립액을 받을 수 있는 직원 그룹을 명시하고 근무 시간수에 관한 조항도 포함합니다. 고용주 적립액도 IRS 가 정한 한도액이 있습니다. 은퇴 적금 플랜은 고용주가 직원의 은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 후 5년간 가입자를 위하여 고용주가 적립할 수 있는 옵션을 고용주 재량에 따라 선택하게 합니다. 고용주 적립을 시작하려면 연금국에 800-773-7752 (800-PRESPLAN)으로 전화해서 요청하거나 연금국 웹사이트 [www.pensions.org](http://www.pensions.org)를 이용하여 Initial Contribution Remittance Form을 보내주십시오..

## 최대 적립 한도액

### 고용인 적립 한도액

보통 은퇴 적금 플랜에 급여 연기 적립액은 2010년에 \$16,500 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는 실제 근무해서 번 과세대상 소득 (즉 주택비가 제외된) 이상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액은 그 해 모든 403(b) 플랜에 총 급여 연기 고용인 적립액에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특수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고용주와 고용인 적립 총 한도액

은퇴 적금 플랜 플랜과 다른 403(b) 플랜에 고용주와 고용인이 적립하는 총 한도액은 2010년에 고용인의 과세대상 소득 (즉, 주택비 사례는 제외하고 현금 사례비만 포함)의 100%와 \$49,000 중 더 작은 액수입니다. 50세가 넘는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적립액은 이 최대 적립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대 적립 한도액의 예

### 예 1

Mr. Joe Jones는 현금 사례 \$10,000과 주거비 \$15,000를 포함하는 총 \$25,000를 받습니다. 연금국 혜택 플랜이 아닌 다른 403(b)나 defined contribution 플랜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은퇴 적금 플랜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적립금은 \$10,000입니다. Mr. Jones는 최대 적립 한도액을 결정할 때 주거비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예 2**

안수 목회자인 Ms. Jane Smith는 모든 것이 Mr. Jones와 같고, 현금 사례 \$60,000과 주거비 \$15,000로 총 \$75,000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10년에 은퇴 적금 플랜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 액수는 \$16,500입니다.

**예 3**

2010년 Ms. Smith를 위하여 교회는 은퇴적금 구조에 \$40,000을 적립했습니다. Ms. Smith는 2010년에 자신이 \$9,000 이상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적립할 수 있는 최대 액수는 \$49,000로 고용주가 \$40,000을 적립했을 때 고용인이 적립할 수 있는 최대 액수는 \$9,000입니다.)

**특수 상황****장기 근무한 가입자**

미국 장로교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격이 되는 가입자는 지금까지 최대 한도액까지 은퇴 적금 플랜과 다른 은퇴 플랜에 적립했다더라도 추가로 더 적립할 수 있습니다. (catch-up contribution) 2010년에 \$16,500 이상을 은퇴 적금 플랜에 더 적립할 수 있는지 IRS Publication 571을 참고하십시오.

**50 세가 넘는 가입자**

위의 장기 근속자를 위한 특별 조항과 별도로 50세나 그 이상이 된 가입자는 은퇴 적금 플랜과 다른 은퇴 플랜에 지금까지 최대 한도액까지 적립했다더라도 추가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한도액은 2010년에 \$5,500입니다.

은퇴 적금 플랜과 다른 은퇴 플랜에 허용되는 최대 한도액을 넘어서 적립할 경우, 추가 적립액은 먼저 장기 근무자를 위한 추가 (catch-up) 적립으로 간주되고, 그 나머지는 나이에 따른 50세 이상의 가입자를 위한 추가 적립으로 간주됩니다.

**이전 (Rollovers)**

은퇴 적금 플랜에 이미 참여하고 있을 경우, 다른 403(b), 401(k), 특정 연금 플랜 혹은 IRA 구조에서 은퇴 적금 플랜으로 이전하려면,

- Fidelity로 800-343-0860으로 전화하여 Rollover Form을 요청하십시오.
- 그 양식을 기입하여 아래의 주소로 보내십시오:  
Fidelity Investments  
P.O. Box 77002  
Cincinnati, OH 45277-0090

현재 은퇴 적금 플랜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구조를 열고 기금을 이전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록서류와 이전 요청 서류를 기입하여 아래의 주소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

Fidelity Investments  
P.O. Box 77002  
Cincinnati, OH 45277-0090

**투자**

Fidelity 는 급여의 일부인 가입자 적립액, 고용주 적립액, 이전한 적립액 등 모든 들어오는 적립액을 매일 투자합니다. Fidelity가 적립금을 받은 다음 날짜로 입금되고 가입자가 지정한 투자 옵션에 투자됩니다. 이 때 적립금이나 이전된 액수와 함께 필수적인 모든 정보가 들어와야 합니다. Fidelity가 투자 옵션이 정해지지 않은채 적립금만 받을 경우에는, 투자 옵션을 정하도록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고 연금국이 지정한 투자 기금으로 투자될 수도 있습니다.

## 고용주나 교회 주소 변경

고용 기관이 변경되거나 교회 주소가 바뀌었을 때 계속 적립하기를 원하면, 가입자와 새 고용기관은 Salary Deferral/Employer Agreement form (ORS-001)를 기입하여 연금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가입자의 이전 고용 기관은 Fidelity invoice에 퇴직한 것을 기입하여 알려줍니다. (이전 고용 기관은 가입자가 그 교회에서 퇴직한 것을 청구서의 가입자 이름 옆에 있는 박스에 “T” 라고 기입하여 보내오면 Fidelity가 퇴직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새교회나 고용 기관이 다른 직원들을 위하여 은퇴 적금 플랜에 적립하지 않고 있을 때는 고용 기관은 Initial Contribution Remittance Form 과 Adoption Agreement 를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이 양식은 [www.pensions.org](http://www.pensions.org)의 Retirement Savings section 에도 있고 Fidelity Investments 의 회계 담당자를 위한 전화인 800-917-4369에 전화해도 됩니다. Fidelity는 첫 적립액을 받은 후 교회나 고용 기관으로 청구서를 보냅니다.

## 투자 수익

가입자의 투자 목적이나 전략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퇴 적금 플랜은 여러가지 종류의 투자 옵션을 제공합니다. Fidelity는 각 기금의 실적, 투자 목적 그리고 전략을 설명해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종류의 투자 옵션은 투자와 관련된 위험도가 있으며 투자 원금이나 이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 투자 분배

적립액을 여러 다른 곳에 1% 배수로 투자할 수도 있고 한가지 종목에 전액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플랜에 처음 등록할 때 적립액 투자 분배를 Fidelity 등록 양식에 기입하십시오. 이 신청서에 투자 내용이 기입되지 않았으면 서류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보내온 적립금도 고용주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Fidelity 는 모든 배당금, 투자 이익, 다른 수익을 포함하여 그 기금으로 들어온 모든 기타 이익을 자동적으로 재투자합니다.

처음 투자한 후 앞으로의 적립금에 대한 투자 종목을 변경하려면 Fidelity, 800-343-0860 으로 전화하거나, [www.fidelity.com/atwork](http://www.fidelity.com/atwork)으로 로그인하십시오. 가입자가 원하면 앞으로 적립금에 (1% 단위로) 대해 언제든지 투자옵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투자 종목 변경

Fidelity로 800-343-0860으로 전화하거나, [www.fidelity.com/atwork](http://www.fidelity.com/atwork)으로 들어가서 투자 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투자 옵션으로 연금국이 승인하지 않은 투자 종목이나 기관으로 구좌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제한이 없으나 연금국이 은퇴 적금 플랜 관리에 방해가 되거나, 빈도수가 지나치고 은퇴적금 플랜의 투자 관리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개개인의 변경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금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보다 짧은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투자를 변경할 때는 단기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은 Fidelity 가 부과하며 특정 기금에서 단기로 들어오고 나갈 때 생기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특정 기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거래 비용에 대하여 각 Fidelity 기금에 관한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PCUSA Socially Responsible Balanced Fund 와 PCUSA Socially Responsible U.S. Equity Fund 는 거래 비용이 없습니다.

## 구좌 잔고 결정

각 가입자의 구좌 잔고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구좌로 들어가는 적립액과
- 기금에 따른 투자 수익과 손실,
- 인출액.

## 분기별 개인 구좌 통지서

가입자는 매 분기마다 Fidelity 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서에는 지난 분기에서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 그동안 변동 사항, 투자 이익/손실, 최근 적립 기록, 그 분기말 구좌액수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가입자는 선택한 투자 종목이 개인의 재정적인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Fidelity는 한 분기가 끝난 후 3 주쯤 후에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를 주의깊게 살펴 보십시오. 잘못된 점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이 통지서를 받은 후 90 일안에 Fidelity 로 알려야 합니다. 분기마다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Fidelity 에 연락하십시오.

## 구좌 잔고 조회

Fidelity 기금에 관한 정보나 구좌 현황, 투자에 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Fidelity, 800-343-0860 으로 전화하십시오. Fidelity 담당자는 최근 설명서를 보내주며 주당 가격과 은퇴 적금 플랜이 제공하는 기금의 투자 상황에 대하여 알려 줄 것입니다. [www.fidelity.com/atwork](http://www.fidelity.com/atwork)로 들어가면 주 7일, 하루 24시간 아무 때나 구좌를 볼 수 있습니다.

## 투자 옵션

처음 등록할 때 적립금에 대해 하나 혹은 그 이상 투자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플랜은 다음과 같은 11가지 투자 종목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Fidelity Retirement Money Market Portfolio,
- Fidelity U.S. Bond Index Fund,
- PCUSA Socially Responsible Balanced Fund,
- Fidelity Equity-Income Fund,
- Royce Opportunity Fund,
- PCUSA Socially Responsible U.S. Equity Fund,
- Fidelity Spartan U.S. Equity Index Fund,
- Fidelity Spartan Extended Market Index Fund,
- Fidelity Growth Company Fund,
- Fidelity Diversified International Portfolio,
- Fidelity Real Estate Investment Portfolio

각 펀드의 투자 목적과 비용에 관한 설명서를 포함하는 은퇴 적금 플랜의 투자 종목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Fidelity, 800-343-0860으로 전화하거나 [www.fidelity.com](http://www.fidelity.com)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연금국 웹사이트, [www.pensions.org](http://www.pensions.org)중 은퇴 적금 플랜 페이지를 이용하십시오.

## 해당되는 법

연금국과 은퇴 적금 플랜은 Security Act of 1933,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그리고 state securities laws 에 의한 등록, 규정, 보고 등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습니다. 은퇴 적금 플랜은 403(b)(9) 교회 은퇴 수입 구좌 플랜으로 1974년 개정된 ERISA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Fidelity 뮤추얼 펀드는 뮤추얼 펀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PCUSA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금은 두 종류가 있으며 이는 Fidelity Management Trust Company 가 연금국을 위해 관리하는 연금국 고유의 기금입니다. 이 두 기금은 등록된 뮤추얼 펀드로써 매일의 평가 금액과 유동성에 관한 한 동일합니다. 은퇴 적금 플랜은 펜실베니아 주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 인출

은퇴 적금 플랜의 목적은 은퇴를 위한 저축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기 인출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403(b)(9) 은퇴 적금 구좌로부터 인출과 배당을 제한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은퇴할 때,
- 59.5 세가 되었을 때,
- 장애자가 되었을 때,
- 자격이 되는 교회로부터 고용 관계가 끝났을 때,
- 사망했을 때,
-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연금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노회가 허락한 평신도 목회자나 안수받은 목회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고용주가 적절한 적립금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출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59.5세 이전에 인출했을 때는 소득세와 아울러 10%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인출 요청을 하려면 Fidelity로 800-343-0860으로 전화하십시오. 인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Fidelity에 알리는 것입니다. 인출하는 기금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 은퇴

55세 이후에 은퇴했을 때, 은퇴 적금 플랜에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둘 경우 계속하여 투자 이익이 쌓이며 찾을 때까지 세금이 연기됩니다.

일단 은퇴를 하면, 70.5세가 되는 해 4월 1일전에 최소 액수를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최소 액수 인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Fidelity, 800-343-0860으로 전화하거나 [www.fidelity.com/atwork](http://www.fidelity.com/atwork)을 이용하십시오.

## 65세 이후에 근무

가입자나 고용주가 은퇴 적금 플랜에 계속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구좌에 있는 금액은 투자된 기금의 실적에 따라 액수가 변화할 것입니다. 70.5세에도 계속 근무하면, 은퇴할 때까지 최소 인출 규정이 연기됩니다.

## 장애

장애 혜택을 받게 된 날로부터 은퇴 적금 플랜 구좌에 있는 액수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상태가 특정 IRS 규정을 충족시키면 IRS는 조기 인출 때 부과되는 10% 벌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벌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은퇴 적금 플랜에 그대로 둘 경우 그 구좌에 있는 기금은 가입자의 이름으로 선택한 투자 기금의 실적에 따라 액수가 변화할 것입니다. 장애 기간 중에 추가로 적립할 수는 없습니다.

## 군복무

가입자가 현역 군복무를 시작하면 은퇴적금 플랜에서 기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현역 군복무를 하면 은퇴 적금 플랜 인출 목적으로 고용관계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은퇴적금 플랜에서 인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6개월간 플랜에 더 적립할 수 없습니다. 군복무가 180일 이상 되면 은퇴적금 플랜에서 벌금없이 찾을 수 있으며, 군복무가 끝난 후 2년안에 언제든지 그 적립금을 일반 IRA에 다시 적립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자격이 되는 고용 기관에서 사임했을 때 은퇴 적금 플랜에 있는 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한 고용기관에서 다른 고용기관으로 옮겨간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인출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기금을 59.5 세 이전에 퇴직하고 인출하면 세금과 아울러 조기 인출로 인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가입자가 퇴직한 후 은퇴적금 플랜에 적립금이 \$1,000 미만일 때는 연금국은 가입자의 동의없이 자동적으로 가입자에게 찾도록 합니다. 이 때, 세금을 연기할 수 있도록 다른 은퇴 구좌로 이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정 기관에서 퇴직한 후 은퇴 적금 플랜에 그대로 적립액을 둘 경우, 기금은 계속 가입자의 이름으로 적립되어 있으며 선택한 투자 종목에 따라 투자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소가 바뀔 때마다 연금국에 알려 주십시오.

## 가입자 사망

은퇴 적금 플랜에서 전액을 찾지 않았을 경우 지정된 수혜자가 나머지 액수를 받게 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혜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급됩니다:

- 가입자 사망 전에 적어도 1년 이상 결혼한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 남아있는 자녀들,
-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가입자 estate.

혼자된 배우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혜택을 IRA 나 다른 403(b)로 이전하여 찾을 때까지 소득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인출 신청

은퇴 적금 플랜으로부터 인출 신청을 하려면 가입자 (혹은 수혜자)는 Fidelity, 800-343-0860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 인출 종류

- 가입자에게 일시불 지급: 계좌 잔액을 전액 일시불로 지불받기를 원하면 20%의 연방 소득세가 인출시에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적립액을 가입자가 인출: 계좌에 있는 적립액 중 일부를 인출하면, 20%의 연방 소득세가 인출시에 공제됩니다.
- 다른 403(b) 플랜이나 IRA 로 이전: 직접 이전을 요청하면 연방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점차적인 인출 플랜: Fidelity 로 하여금 매달 일정액을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없어질 때까지, 혹은 Fidelity 에 다른 방법을 요청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20%의 연방 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idelity Investments 로 800-343-0860으로 전화하십시오.

##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인출

59.5세가 되지 않았거나, 은퇴, 시무 종료, 사망 장애의 경우가 아닐 때는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만 은퇴 적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될 수 없는 급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연금국이 인출을 허락하지 못하도록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 인출을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소득세 공제 이외에 1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조기 인출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거주할 주택을 살 때,
-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한 비용이 필요할 때,
- 부모,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이나 지정한 일차 수혜자가 사망하여 장례비가 필요할 때,
- 부모,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이나 지정한 일차 수혜자를 위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기관에서의 교육비가 필요할 때,
- 부모,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이나 지정한 일차 수혜자를 위하여 보험에서 지불되지 않는 의료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플랜은 가입자가 당면한 다른 종류의 어려움도 검토해 줄 것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조기 인출을 할 때, 가입자는 가입자가 적립한 액수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기관이 적립한 액수와 해당 투자 이익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수받은 목회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입할 때는 *manse equity withdrawal* 로 간주되어 찾을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특수한 조언이 필요하면 세금 전문가나 재정 전문가와 의논하십시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

한 조기 인출이 필요하다면, 800-343-0860으로 전화하여 수속에 대하여 문의하십시오. 적립금이 인출되기 전에 연금국의 Hardship Review Committee가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조기 인출을 한 이후 6개월 동안은 다시 Salary Reduction Contribution을 통해 적립할 수 없습니다.

## 이전 (Rollovers)

Rollover 는 가입자의 은퇴 적금 플랜 계좌에 있는 기금을 다른 403(b) 계좌나 401(k) 플랜, 특정 연금 플랜, IRA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rollover를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이 되는 근무로부터 퇴직했을 때,
- 55 세 이후에 은퇴했을 때,
- 장애자가 되었을 때,
- 59.5 세가 되었을 때,
- 사망했을 때입니다.

은퇴 적금 플랜에 있는 기금을 다른 403(b), 401(k), 특정 연금 플랜, IRA 로 이전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이전을 할 때 연방세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Roth IRA 로 이전하면 이전하는 그 해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Fidelity 와 자발적인 세금 공제 계약을 했더라도 가입자에게 모든 세금 공제와 세금 보고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입자의 은퇴 적금 계좌에 있는 기금을 이전하기를 원하면, Fidelity, 800-343-0860으로 전화하여 해당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전액 혹은 일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매분기마다 수수료, \$3.75 가 은퇴 적금 플랜에서 공제됩니다. 이 수수료는 다음 분기가 시작할 때 가입자의 계좌에서 공제됩니다.

## 근무 중일 때 인출 (In-Service Withdrawals)

가입자가 59.5세가 안된 상태에서 자격이 되는 기관에서 근무 중일 때는 인출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습니다.

- 59.5세가 되었을 때
- 자격이 되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 안수받은 목회자가 집을 사기 위하여 고용주에 의한 적립금을 찾을 때.

연금국 은퇴적금 플랜은 대출 업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재심 신청 절차

은퇴 적금 플랜 구조에 관한 연금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국이 은퇴 적금 플랜 인출 요청에 대해 전체 혹은 일부 지불을 거부할 때 연금국이 가입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안에 가입자는 연금국으로부터 거부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에는

-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 재심을 위한 추가 정보 요청,
- 은퇴 적금 플랜의 재심 절차에 관한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연금국에 동의하지 않으면 편지를 받은 지 180일 안에 다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요청 편지에 재심 요청 이유와 재심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정보를 첨부하십시오. 다음의 주소로 보내십시오

Retirement Savings Plan  
The Board of Pen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2000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19103-3298

연금국이 재심 요청을 받으면 두 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첫 단계로 은퇴 적금팀으로부터 30일 안에 서면 답장을 받게 됩니다. 이 답장이 늦어지면 왜 답이 늦어지는지 또 언제 답을 받게 될 지에 관한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첫단계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60일 안에 은퇴 적금 플랜팀에 두번째 단계 재심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Secretary of the Appeals Board 로 보내십시오. 첫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관련 추가 정보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30일 안에 Retirement Benefits, Vice President로부터 답신을 받을 것입니다. 이 답장이 늦어지면 왜 답이 늦어지는지 또 언제 답을 받게 될 지에 관한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재심 위원회는 연금국 President와 세명의 Vice President가 포함되며, 이들은 은퇴 적금 플랜의 일상 업무에 관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재심 위원회가 30일 안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가입자에게 알려 줍니다. 이 재심 위원회의 모든 해석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연금국 은퇴 플랜은 이 재심 과정에서 ERISA의 청구서 처리 과정에 관한 규정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재심 청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800-773-7752 (800-PRESPLAN) 으로 전화하여 Appeals Process Guidelines 를 요청하십시오.

### 행정

미국 장로교 연금국은 은퇴 적금 플랜을 권장하고, 혜택에 들 수 있는 자격, 투자 구조 활동과 금액 등 은퇴 적금 플랜 규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답합니다. Fidelity Investments는 적립액 영수, 투자, 서류 처리, 지불 등 기록 보관 기능을 연금국과 협력하여 수행합니다.

은퇴 적금 플랜은 연방법과 펜실베니아 주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책자 혹은 은퇴 적금 플랜의 어떠한 규정도 Internal Revenue Code나 관련 규정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 이혼시 혜택에 관한 권리

은퇴 적금 플랜에 있는 가입자 몫의 적립액은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 (QDRO)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채자들이 지불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QDRO 는 이혼, 자녀 양육과 비슷한 경우에 관련 법원이 발행하는 특별 명령입니다. 이 경우에, 가입자의 배우자, 이전 배우자, 부양 가족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은퇴 적금 계좌에 있는 적립금 전액 혹은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가입자, 혹은 수혜자, 담당 변호사는 연금국에 800-773-7752 (800-PRESPLAN) 로 전화하여 QDRO 절차에 관한 정보를 담은 Benefits Plan and Divorce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플랜 개정이나 종료

연금국은 매년 은퇴 적금을 적립하거나 은퇴 적금 플랜을 계속해야 할 법적 혹은 계약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퇴 적금 플랜이 종료되면, 영향을 받는 각 가입자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적립액에 대한 100% 수령권을 갖습니다. 연금국은 적립액 전액이 Fidelity에 의해 지불될 때까지 은퇴 적금 플랜 규정에 따라 각 가입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고용 기관과 연금국은 은퇴 적금 플랜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연금국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연금국 이사회가 결정하는 대로 은퇴 적금 플랜을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 혹은 종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은퇴 적금 플랜

The Board of Pen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2000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19103-3298

동부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5시까지

무료 전화 800-773-7752 (800-PRESPLAN)

TDD 877-522-7948

Main Number 215-587-7200

Fax 215-587-6215

Email [pensions@pensions.org](mailto:pensions@pensions.org)

Web [www.pensions.org](http://www.pensions.org)

Fidelity Investments

800-343-0860

P.O. Box 770002

Cincinnati, OH 45277-0090

[www.fidelity.com](http://www.fidelity.com)

[www.fidelity.com/atwork](http://www.fidelity.com/atwork) (Fidelity NetBenefits, 가입자가 자신의 계좌를 볼 수 있음)

## 적립금

고용 기관은 청구서와 함께 수표를 다음의 주소로 직접 보내십시오.

Fidelity Invest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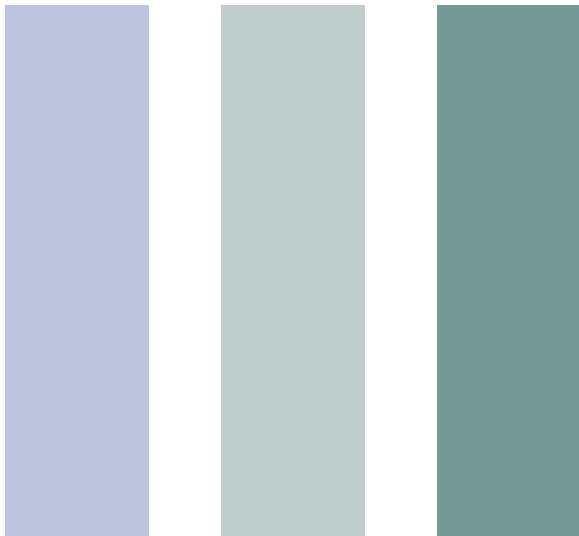
P.O. Box 770002

Cincinnati, OH 45277-0090

## Notes

---





2000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19103-3298  
800-773-7752 • 800-PRESPLAN • [www.pensions.org](http://www.pensions.org)

© 2010 The Board of Pensions of the Presbyterian (USA)

ORS-100 5/10